

주식회사 **GS** 글로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2021. 5. 31.

GS 글로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

제정 2021. 5.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GS글로벌(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자율준수”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CP 운영조직”은 CP 운영에 있어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3조(자율준수관리자 관리자 임명)

- ① 회사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다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에게 대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및 개선 권한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CP의 계획수립 및 운영
2. CP의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현황 보고
3. 본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 관련 교육계획의 시행 및 관리
5. CP 활동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정기보고 및 필요 시 수시보고)
6.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CP 운영조직의 업무)

- ① CP 운영조직은 제5조 각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② CP 운영조직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2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7조(임직원의 직무)

회사 임직원의 CP 관련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업무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
3.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제8조(사전업무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CP 운영조직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2. 1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제3장 CP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의지선언

제9조(선언 목적)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선언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공표 및 의지선언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0조(자율준수편람)

- ① CP 운영조직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

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대표이사와 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CP 운영조직은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교육 전담부서의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전담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CP 운영조직의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④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CP 운영조직이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12조(내부감시체계)

- ① 회사는 일상 업무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조직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접보고체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고발시스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CP 운영조직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운영조직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제16조(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

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부서가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회사 인사 규정 또는 하위 규칙 등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절 효과성 평가

제17조(CP 운영의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에도모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외부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7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9조(기타)

-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운영조직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